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박태경 소유물건
(2025타경41365)

의뢰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법보좌관 류재왕

감정평가서번호: C250304-2-01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창룡감정평가사사무소

(부동산)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정 경 주

감정평가액	삼억이천칠백일십만원정(₩327,100,000.-)					
의뢰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법보좌관 류재왕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경매4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박태경 (2025타경41365)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3.17	2025.03.14 ~ 2025.03.17	2025.03.17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1개	구분건물	1개	-	319,000,000
	제시외건물	40.5	제시외건물	40.5	-	8,100,000
		이	하	여	백	
합계					₩327,1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대상물건 개요

감정평가 대상물건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 소재하는 ‘아산국가산업단지 경기포승지구’ 내에 위치한 구분소유 부동산(통칭 ‘코업스테이호텔 평택항’ 제1층 제101호)입니다.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3-14 (도로명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184번길 3-5)						
	기호	명칭 층 / 호	건물면적(m ²)		대지권 면적(m ²)	용도	
전유			공용	공부		현황	
1	통칭 ‘코업스테이호텔 평택항’ 제1층 제101호	58.81	35.01	17	소매점	소매점	2013. 11.11.

I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 평가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입니다.

2. 실지조사기간 및 기준시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년 3월 17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였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위한 실지조사를 시행한 기간은 2025년 3월 14일 ~ 2025년 3월 17일이며,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25년 3월 17일입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 를 기준으로 결정하였고,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습니다.

4. 감정평가의 근거 및 방법

가. 감정평가의 근거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 기준』 등 감정평가 관련법령과 감정평가 일반 이론에 근거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나. 감정평가방법

부동산 및 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방식에는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원가방식(원가법 및 적산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및 공시지가기준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수익방식(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이 있습니다.

원가방식 중 ‘원가법’은 대상물건의 제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고, ‘적산법’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사용료를 포함)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입니다.

비교방식 중 ‘거래사례비교법’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고, ‘임대사례비교법’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입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또한, ‘공시지가기준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補正)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입니다.

수익방식 중 ‘수익환원법’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고, ‘수익분석법’은 일반 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입니다.

다.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평가방법과 합리성 검토

(1)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방법 관련 규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 부동산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대지 지분소유권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을 의미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2) 대상물건에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대상물건은 구분소유 부동산이므로 인근 유사 부동산의 일반적인 거래시세와 입지조건 및 건물의 구조·층계·시공상태·설비상태, 층별·위치별 효용성 등 제반 가치형성요인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건물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건물 및 토지가액의 배분

건물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한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건물과 토지의 가액으로 배분하는 데에 적용한 배분비율은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발행한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토지·건물 배분비율 작성 연구(2024)』 상 ‘토지·건물 배분비율표’ 와 대상건물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성 및 건물의 가격형성요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고, 건물과 토지의 배분가액은 후첨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에 표시하였습니다.

(4) 합리성검토 및 시산가액 조정을 위한 다른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구분소유 부동산은 동규칙에서 주된 감정평가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래사례비교법” 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산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상물건은 시장에서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한 가격으로 거래되므로 ‘원가법’ 의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고, 인근 유사부동산의 신뢰성 있는 임대차계약서 확보의 난이성과 적정한 순수익 및 환원이율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수익환원법’ 의 적용도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미 부동산시장에서 대상물건과 유사한 부동산들의 거래사례를 다수 포착할 수 있으므로, 시세를 가늠할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사료되어 ‘원가법’ 및 ‘수익환원법’ 적용에 의한 합리성 검토 및 시산가액 조정은 생략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기타 참고사항

- ① 대상건물의 위치는 건축물현황도(1층 평면도)를 기준으로 현장조사에 의하여 확인하였습니다.
- ②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와 ‘사진용지’ 참조하시기 바라며, 대상건물의 부합물인 소유자미상의 테라스(경량철골조 록산지붕 단층, 차양 및 데크)는 현장조사시 개략적으로 면적을 실측하고, 제시외건물㉠으로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③ 후첨 ‘사진용지’ 참조하시기 바라며, 현장조사시 대상건물 외벽에는 체인화 편의점 상호가 쓰인 간판이 붙어 있었고, 내부에는 개방형 냉장고, 음료 냉장고 및 계산대 등이 있었으나, 탐문 결과 상당 기간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조사되었으며,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차 관련 사항은 미상입니다.
- ④ 후첨 ‘사진용지’ 참조하시기 바라며, 건물 내외부에 소재하는 소유자미상의 개방형 냉장고 및 음료 냉장고(유니트 쿨러 등 부대시설 포함), 전광판 등 제시외물건은 해체 및 이동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제외 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1. 감정평가 개요

본 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격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였습니다.

2. 거래사례 선정

가. 인근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지번	명칭 층 / 호	면적(m ²)		거래가격(원) (전유면적당 단가)	거래시점
			전유	대지권		사용승인일
사례1	포승읍 만호리 575-1 외	스마트빌듀오3차 제1층 제000호	41.73	11.2759	150,000,000 (3,594,536원/m ²)	2024.01.12.
						2014.12.31.
사례2	포승읍 만호리 574-1 외	평택하버라마다양코르호텔 제1층 제000호	84.8	15.1845	515,000,000 (6,073,113원/m ²)	2023.06.08.
						2017.08.31.
사례3	포승읍 만호리 574-5 외	스마트빌듀오1차 제1층 제000호	37.83	9.5763	240,000,000 (6,344,171원/m ²)	2022.03.25.
						2014.12.31.
사례4	포승읍 도곡리 1117-10	서평택삼익마에스트로 제1층 제000호	76.32	13.9409	540,000,000 (7,075,471원/m ²)	2024.08.12.
						2015.06.12.
사례5	포승읍 도곡리 1117-1 외	메트로카운티 제1층 제000호	59.8	22.64	298,540,000 (4,992,307원/m ²)	2023.12.19.
						2015.03.25.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한국부동산원 KAIS, 집합건축물대장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비교사례 선정

위의 사례 중 대상물건과 위치적·물적 유사성이 있고,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가치형성요인의 비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례 2>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3. 사정보정치의 산정

사정보정이란 거래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어 있거나, 거래 당사자가 시장에 정통하지 않은 등 수집된 거래사례의 가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적절한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기 선정된 거래사례는 실거래 신고된 것으로, 인근 유사부동산의 거래가격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됩니다.(1.00)

4. 시점수정

시점수정이란 감정평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비교사례의 거래시점과 대상물건의 기준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치하여 가격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거래가격을 기준시점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입니다. 본 감정평가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지역별 자본수익률(집합상가)을 활용하여 시점수정치를 산정하되, ‘경기도 집합상가 자본수익률’을 적용하였습니다.

기간 (거래시점~기준시점)	시점수정치	계산식
2023.06.08.~2025.03.17.	1.01576	지역 : 경기 (2023.06.08~2025.03.17) 2023년 02분기 : 0.01 2023년 03분기 : -0.04 2023년 04분기 : 0.22 2024년 01분기 : 0.36 2024년 02분기 : 0.43 2024년 03분기 : 0.32 2024년 04분기 : 0.15 2025년 01분기 : 0.15 (2024년 04분기 자료) $(1+0.0001*23/91)*(1-0.0004)*(1+0.0022)$ $*(1+0.0036)*(1+0.0043)*(1+0.0032)*(1+0.0015)$ $*(1+0.0015*76/92) \approx 1.01576$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가치형성요인의 비교

구분		격차율		비고
조건	세부항목	비교사례 (사례2)	대상물건 (기호1)	
단지 외부요인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등), 배후지의 크기, 상가의 성숙도, 차량이용의 편리성(가로의 폭, 구조 등)	1.00	1.08	대상물건은 비교사례 대비 가로의 폭, 구조 등 차량이용의 편리성 및 대중교통의 편의성 등 단지외부요인 우세합니다.
단지 내부요인	단지 내 주차의 편리성, 건물 전체의 공실률, 건물의 관리상태 및 각종 설비의 유무, 건물 전체의 임대료 수준 및 임대비율,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건물의 규모 및 최고 층수	1.00	0.80	대상물건은 비교사례 대비 건물 전체의 규모, 최고 층수, 마감상태 및 노후도 등 단지내부요인 열세합니다.
호별 요인	층별 효용, 위치별 효용 (동별 및 라인별), 주출입구와의 거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와의 거리, 향별 효용,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1.00	1.02	대상물건은 비교사례 대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등 호별요인 다소 우세합니다.
그 밖의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1.00	대체로 대등합니다.
누 계		1.000	0.881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적용단가의 결정

기호	거래사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산정단가 (원/전유면적 ^{m²})	결정단가 (원/전유면적 ^{m²})
	사례 기호	단가(원/ ^{m²})					
1	사례2	6,073,113	1.00	1.01576	0.881	5,434,735	5,430,000

나.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결정가액 : 백만원 미만 절사)

기호	명칭 층 / 호	전유면적(^{m²})	전유면적당 단가(원/ ^{m²})	산정가액(원)	결정가액(원)
1	통칭 '코업스테이호텔 평택항' 제1층 제101호	58.81	5,430,000	319,338,300	319,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참고가격자료

1. 인근지역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대상물건이 위치한 ‘아산국가산업단지 경기포승지구’ 내에 위치한 집합상가 1층의 기준시점 이전 실거래 신고된 사례들의 가격수준은 전유면적당 약 3,500,000원 ~ 7,000,000원/㎡ 내외로 위치, 건물의 유지 관리 상태 및 전유면적의 크기 등에 따라 차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부동산시장에 나온 인근 유사부동산 매물의 호가 수준은 그보다 다소 하락한 추세로 보이지만, 거래는 드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 감정평가사례

구분	소재지 지번	명칭 층 / 호	면적(㎡)		평가가액(원) (전유면적당 가액)	평가목적
			전유	대지권		기준시점
A	포승읍 만호리 574-7 외	더스위트하버 제1층 제000호	51.70	8.9272	329,000,000 (6,363,636원/㎡)	법원경매 2024.08.21.
B	포승읍 만호리 574-7 외	더스위트하버 제1층 제000호	36.66	6.3302	190,000,000 (5,182,760원/㎡)	법원경매 2024.07.10.
C	포승읍 만호리 574-5 외	스마트빌듀오1차 제1층 제000호	46.72	5.9133	250,000,000 (5,351,027원/㎡)	담보 2024.06.03.
D	포승읍 도곡리 1117-5	이태원 제1층 제000호	44.4	10.1	284,000,000 (6,396,396원/㎡)	담보 2024.10.02.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KAPA HUB PLUS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V. 감정평가액의 결정

1.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대상물건 인근에 위치한 유사부동산의 실거래 신고된 가격수준과 감정평가 사례의 가액수준 등을 검토한 결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비준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되어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은 비준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액 결정

(감정평가액(원) : 백만원 미만 절사)

기호	소재지	명칭 / 층 / 호	전유면적(m ²)	전유면적당 단가(원/m ²)	감정평가액(원)
1	만호리 573-14	통칭 '코업스테이호텔 평택항' 제1층 제101호	58.81	5,430,000	319,000,000
기호	소재지	구조 및 용도	면적(m ²)	단가(원/m ²)	감정평가액(원)
㉠	만호리 573-14	경량철골조 렉산지붕 단층 테라스(차양 및 데크)	40.5	식	8,100,000
합계액(원)					327,1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	(제시외건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3-14 위 지상	테라스 (차양 및 데크)	경량철골조 렉산지붕 단층	40.5	40.5	8,100,000	
합 계							₩327,100,000.-	
			이	하	여	백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 대상건물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 소재하는 '아산국가산업단지 경기포승지구' 내 지원 시설구역에 위치하고, 부근에는 공업용 부동산, 숙박시설, 주상용 및 상업·업무용 부동산 등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 대상건물까지 차량을 통한 접근 원활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는 등 제반 교통상황 보통입니다.

(3)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건물 내 제1층 제101호로 2013.11.11.에 사용승인 되었으며,

- 외벽 : 석재 및 유리마감 등,
- 내벽 : 타일 및 유리마감 등,
- 창호 : 새시창호 등 입니다.

(4) 이용상태

- 대상건물의 공부상 용도는 소매점으로 현장조사시 외벽에는 체인화 편의점 상호가 쓰인 간판이 붙어 있었고, 내부에는 개방형 냉장고, 음료 냉장고 및 계산대 등이 있었으나, 탐문 결과 상당 기간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조사되었습니다.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5) 설비내역

- 대상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단지 내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및 기계식 주차설비 등 구비되어있고, 대상건물에는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정방형 평지로 현황 상업용으로 이용 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 대상토지 남서측으로 왕복 6차선, 북동측으로 왕복 4차선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반상업지역, 대로1류(폭 35m~4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산업단지(포승지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원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9) 공부와의 차이

-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와 '사진용지' 참조하시기 바라며, 대상건물의 부합물인 소유자미상의 테라스(경량철골조 렉산지붕 단층, 차양 및 데크)는 현장조사시 개략적으로 면적을 실측하고, 제시외건물㉠으로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후첨 '사진용지' 참조하시기 바라며, 대상건물 내외부에 소재하는 소유자미상의 개방형 냉장고 및 음료 냉장고(유니트 쿨러 등 부대시설 포함), 전광판 등 제시외물건은 해체 및 이동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제외 하였습니다.

광역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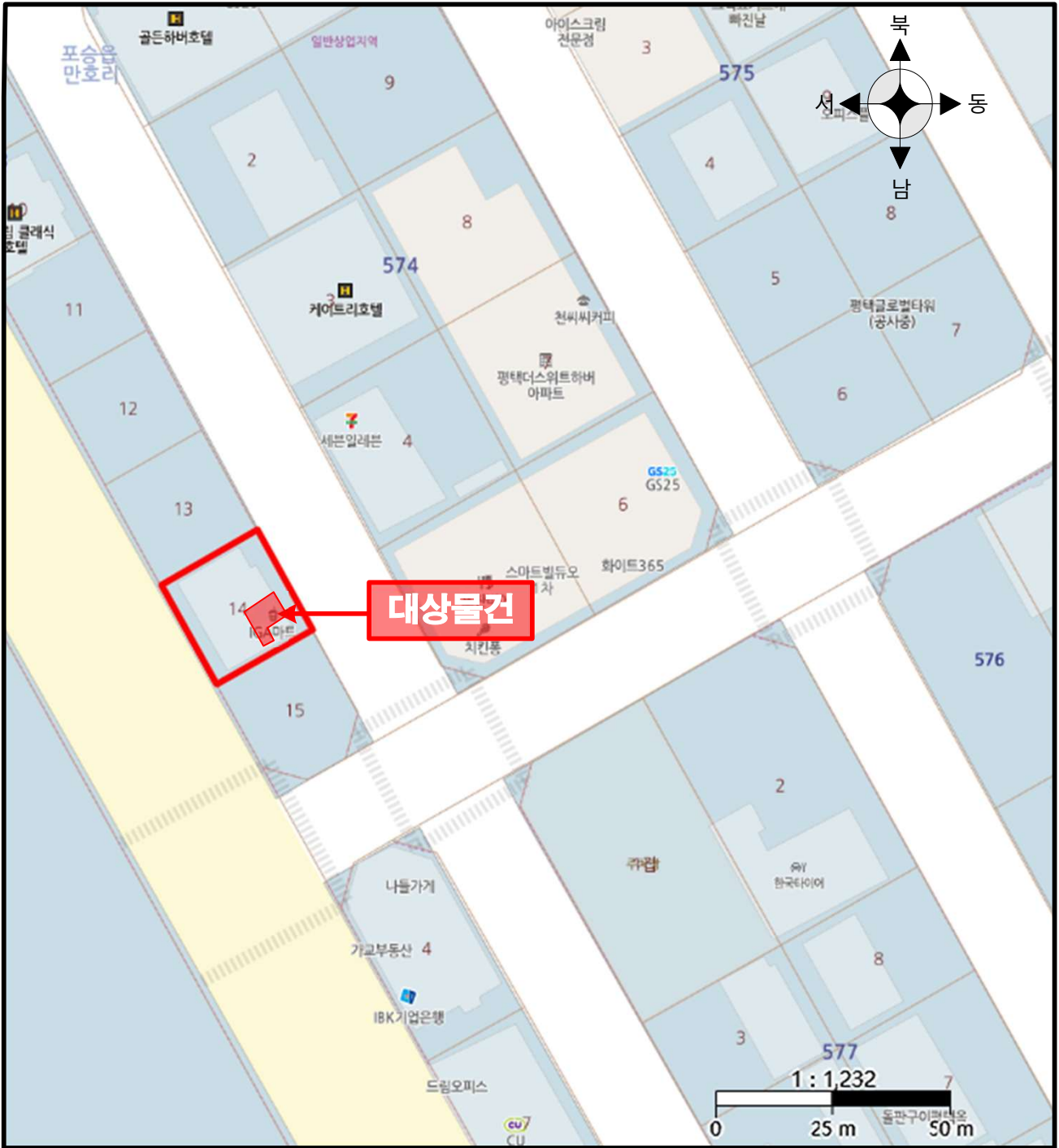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3-14
통칭 '코업스테이호텔 평택항' 제1층 제1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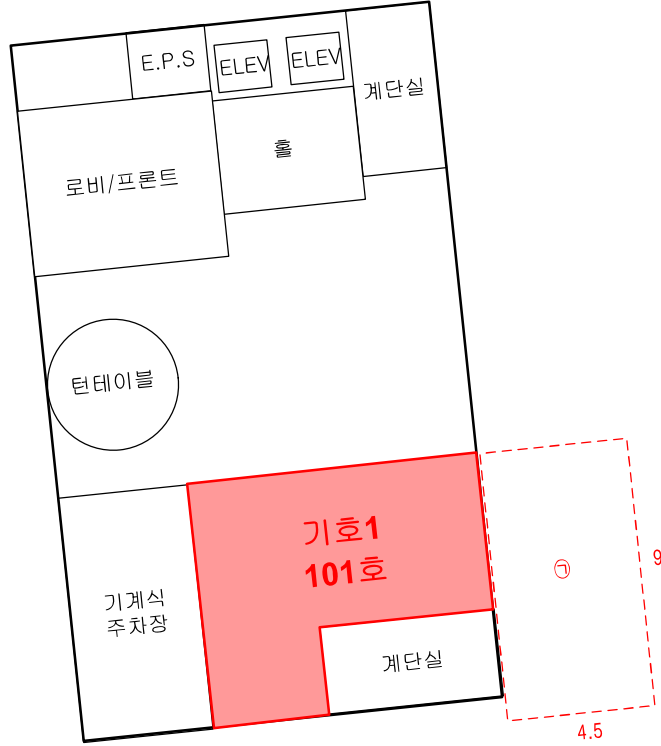
상 세 위 치 도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3-14 통칭 '코업스테이호텔 평택항' 제1층 제101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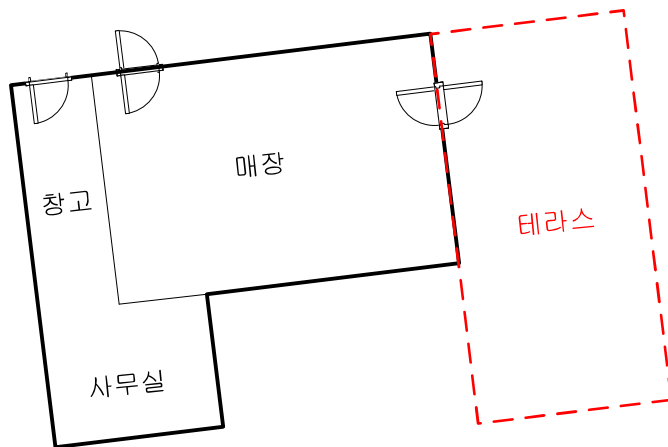


호별 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호별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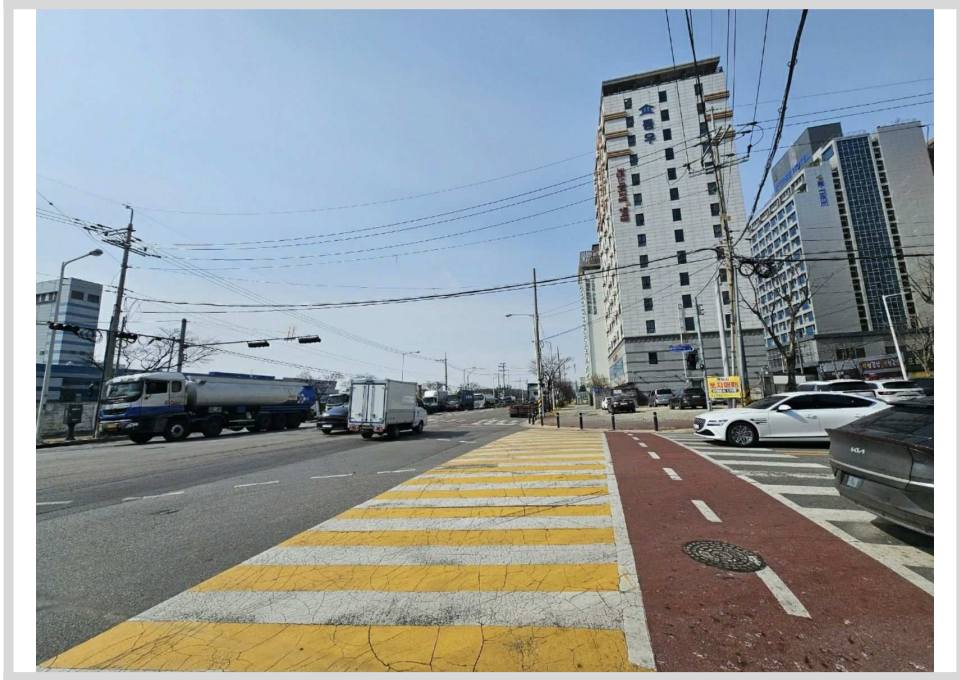
[내부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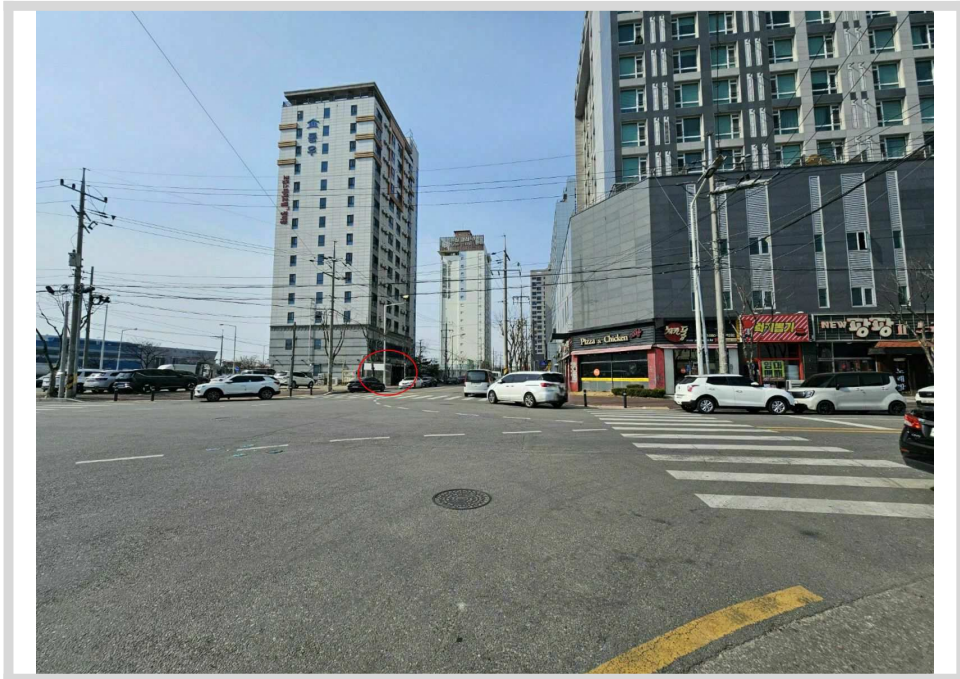
[제시외건물]

①경량철골조 렉산지붕 단층, 테라스(차양 및 데크) 약 40.5㎡

사 진 용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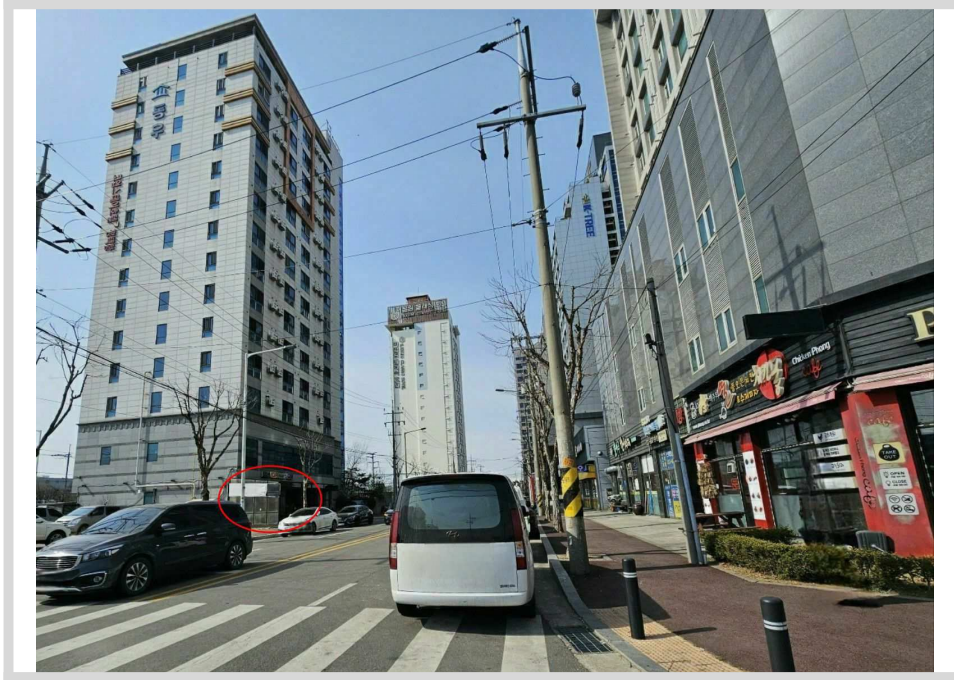


대상물건 주위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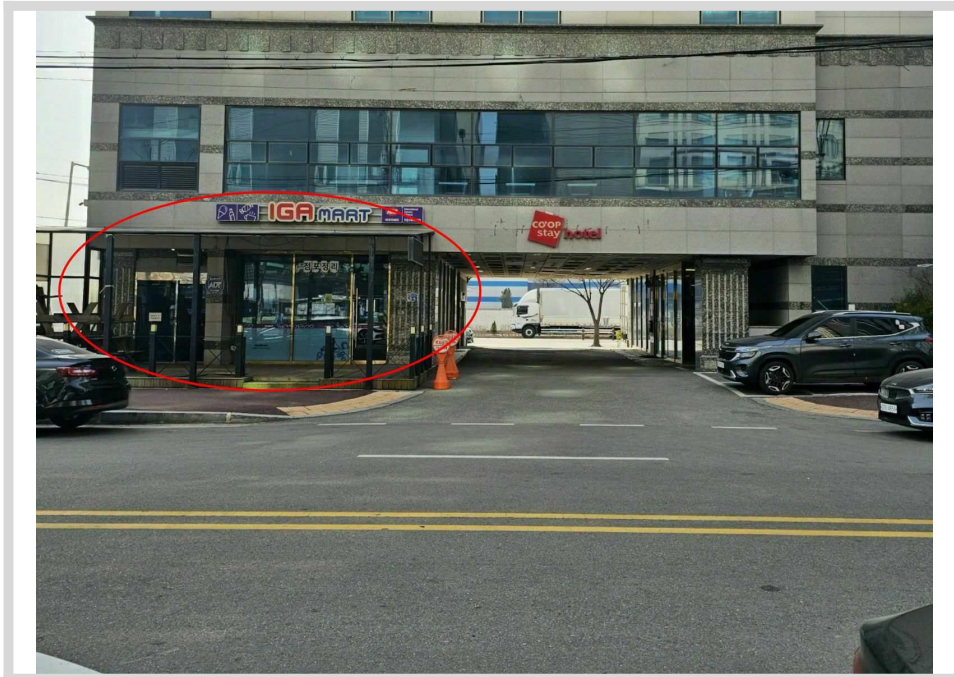


대상물건 주위환경

사진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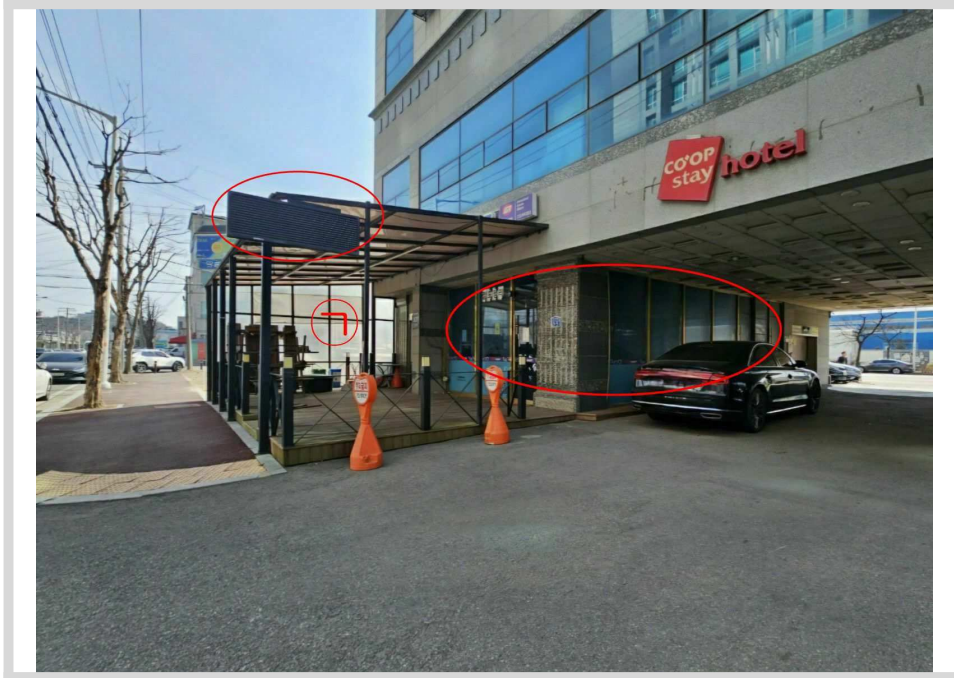


대상물건 주위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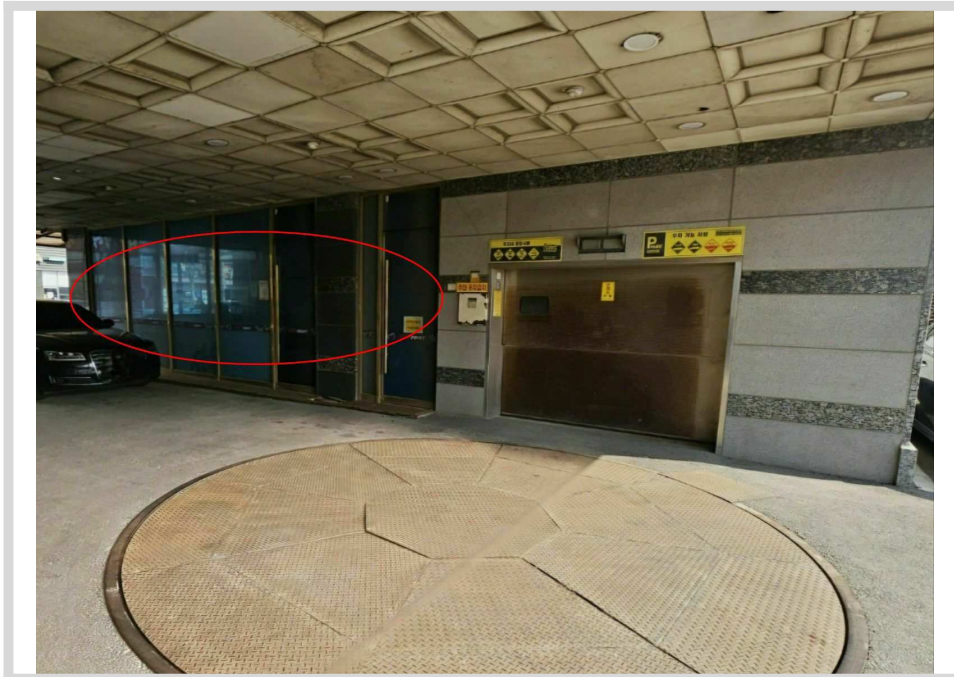


대상물건 및 제시외건물㉠ 전경

사 진 용 지



대상물건, 제시외건물㉠ 및
전광판(감정평가제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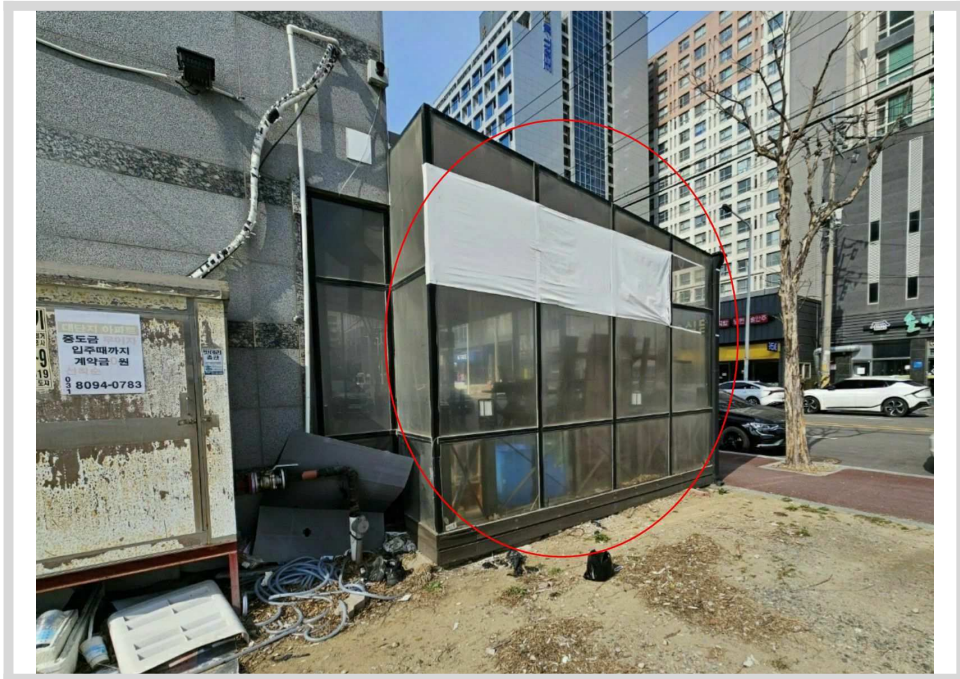


대상물건 전경

사 진 용 지



대상물건 현황



제시외건물㉠ 전경